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신지식인 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려는 것이나, ‘수산신지식인’의 개념이 기존 법률이나 사회 일반에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문에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
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
도하는 수산업활동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17조의2(수산 신지식인의 육성) ①</u> <u>해양수산부장관은</u> <u>해양수산 분야의</u> <u>지식·기술 개발을</u> <u>통한 수산업·어촌</u> <u>의 변화와 혁신을</u> <u>도모하기 위하여</u> <u>수산 신지식인을</u> <u>육성하는 정책</u> <u>수립하고 시행하</u> <u>야 한다.</u> <u>② 해양수산부장관</u> <u>은 해양수산부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제1항에 따른</u> <u>수산 신지식인을</u> <u>선정하고 필요한</u>	<u>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u> <u>해양수산부장관은</u> <u>수산업 분야에서</u> <u>새로운 지식을 창</u> <u>조하여 유형·무형</u> <u>의 새로운 부가가</u> <u>치를 창출하고 이</u> <u>를 사회적으로 공</u> <u>유함으로써 수산</u> <u>업·어촌의 변화와</u> <u>혁신을 주도하는</u> <u>수산업활동을 하는</u> <u>자(이하 이 조에서</u> <u>“수산신지식인”이</u> <u>라 한다)를 육성하</u> <u>기 위한 정책</u> <u>수립하고 시행하여야</u>

	<u>지원을 할 수 있다.</u>	<u>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u> <u>수산신지식인의 선</u> <u>발·육성 및 지원</u> <u>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해양수산부령으</u> <u>로 정한다.</u>
--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00
----------	------

발의연월일 : 2025. 4. 17.

발 의 자 : 어기구·박희승·송옥주
이개호·오세희·허성무
안호영·주철현·임호선
박 정·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수산신지식인의 개념을 명시함(안 제17조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활동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u> <u>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u> <u>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u> <u>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u> <u>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u> <u>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u> <u>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u> <u>수산업활동을 하는 자(이하 이</u> <u>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u> <u>다)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u> <u>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u> <u>의 선발·육성 및 지원 등에 필</u> <u>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u> <u>정한다.</u>